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은 토목·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건설산업 고도화·고부가화를 기반으로 한 로봇·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건설신기술 시험·검사에 한계가 있어 시험·검사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및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 및 행정력 절감 등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 확대(안 제31조제4호)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함.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 상향(안 제52조 제1항 후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전에 가격입찰 이후 제출할 수
있는 기준금액(예정 용역사업비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을 상향함.

다. 기타

1) 자구수정(안 제42조제1항제5호)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자구 수정

2) 건설기술인 업무별 구분 명확화(안 제4조 별표 1)

건설기술인의 업무내용에 따라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
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술등급을 산정하도록 명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30. ~ 2024. 1. 9.)

3) 행정규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를 각각 “시험기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이”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급”을 “구분 및 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인의”을 “건설기술인은 업무내용에 따라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분하고,”로, “특급”을 “각각 특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건설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 ----- ----- ----- ----- ----- -----
1.~3. (생략)	1.~3. (생략)
4.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 · 공립 <u>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u> 발행한 각종 시험 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 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	4. ----- ----- <u>시험기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 · 검사기관이</u> ----- ----- ----- -----

를 갈음할 수 있다. 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 · 국립 <u>시험기관 또는 건설</u> <u>엔지니어링사업자가</u>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나.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 적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 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 술인을 말한다. 1. ~ 4. (생략)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 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 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u>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u>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6. ~ 9. (생략)	----- 가. ----- ----<u>시험기관, 건설엔지니어링</u> <u>사업자 또는 「국가표준기본</u> <u>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u> <u>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u> <u>검사기관이</u> ----- 나. (현행과 같음)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및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u> <u>에 관한 특별법」</u> ----- ----- 6. ~ 9.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55